

새로운 입국심사수속 (개인식별정보 제공 의무화) 개요

법무성 입국관리국

1 처음에

2006년 5월 24일에 공포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테러의 미연방지를 위한 규정의 정비가 행해진 그 일환으로써 입국심사시에 개인식별 정보를 이용한 테러 대책이 실시되게 되었으며, 올해 11월 20일부터 실시됩니다.

이 새로운 입국심사수속은, 입국 신청시에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한 다음 입국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.

개인식별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할 것을 거부한 경우,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며 국위퇴거를 명령 받게 됩니다.

2 대상자

아래 면제자를 제외한, 일본으로 입국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이 해당됩니다.

- (1) 특별영주자
- (2) 16세 미만인 자
- (3) 「외교」 또는 「공용」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자
- (4) 국가 행정기관의 장이 초빙한 자
- (5) (3) 또는 (4) 에 준하는 자로 법무성령이 정하는 자

3 새로운 입국심사수속

신청자 분은 아래 내용에 따라 수속해 주십시오.

① 입국심사관에게 여권, ED카드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.

② 입국심사관의 안내를 받은 후, 원칙적으로, 양손 집게손가락을 지문인식기기 위에 대십시오. 지문 정보를 전자적으로 인식합니다.

③ 지문인식기기 윗부분에 있는 카메라로 얼굴사진을 촬영합니다.

④ 입국심사관에게서 인터뷰를 받습니다.

⑤ 입국심사관에게서 여권 등을 받으면 심사가 끝납니다.



Q & A

새로운 입국심사를 언제서 시작하나요? 등, 새로운 입국심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드립니다.

Q . 언제서 입국심사시에 지문, 얼굴사진을 제공해야 합니까?

A . 개인식별정보로서의 지문,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는 자 또는 테러리스트 등 요주의 인물 발견이 가능해져 테로의 미연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

Q .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는, 어떻게 하면 됩니까?

A . 집게손가락 결손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, 법무성령이 정하는 순번에 따라 다른 손가락 지문을 제공 받게 되어있으므로,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에게 신고하시고 그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.

Q . 지문 또는 얼굴사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,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?

A . 입국심사관은 해당 외국인이 면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심중히 심사합니다만, 해당 외국인이 면제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며, 일본으로부터 퇴거를 명령 받게 됩니다.

Q . 입국심사관에게 제공한 개인식별정보를 어떻게 보호합니까?

A . 제공된 개인식별정보(지문 및 얼굴사진)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「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적정하게 취급합니다. 또한 정보 보안 측면에서도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.

문의처 : 법무성 입국관리국 총무과

우편 100-8977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-1-1

TEL : 03-3580-4111, 홈페이지 : <http://www.moj.go.jp/>